

잔액충전서비스 이용약관

제 1 조 (목적)

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이 금융결제원을 통한 "오픈뱅킹업무"와 하나은행의 계좌간 자동이체 업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"잔액충전서비스"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용자와 은행간의 권리와 의무,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- "서비스"란 은행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"입금계좌"의 지정된 잔액보다 부족한 경우, 지정된 잔액과 현재 잔액의 차이만큼 부족한 자금을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입금계좌로 출금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 - "사용자"란 제 1 호의 서비스를 이용을 신청하고 본 약관에 동의한 사용자를 말합니다.
 - "잔액"이란 은행의 입금계좌에서 출금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.
 - "출금계좌"란 은행에 등록된 오픈뱅킹 계좌 및 은행 예금계좌 중에서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.
 - "입금계좌"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출금계좌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.
 - "출금이체"란 사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사용자 명의의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 - "참가기관"이란 금융결제원의 사원,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으로서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출금·입금, 각종 조회 등의 업무 처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 - "오픈뱅킹업무"란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의 「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약관」에 동의하여 오픈뱅킹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참가기관 내의 금융서비스를 은행이 다른 참가기관과 별도 제휴 계약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관련 업무를 총칭합니다.
 - "모바일앱"이란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(하나원큐 앱)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및 관련 법령과 은행의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계좌간 자동이체 약관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3 조 (서비스의 가입)

- 서비스 가입대상은 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14 세 이상의 개인고객입니다.
- 사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 및 가입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하면 서비스 가입이 완료됩니다.

- ③ 은행은 사용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은 승인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1. 사용자의 실지명의를 아니거나 타인의 실지명의를 이용한 경우
 2. 은행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
 3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은행에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
 4.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써 계약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
 5. 본 약관 제 5 조 제 2 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④ 은행은 제 3 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의 가입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합니다.

제 4 조 (서비스의 내용)

- ① 사용자는 은행에 등록된 오픈뱅킹 출금계좌, 은행 예금계좌를 출금계좌로 지정을 할 수 있으며, 2 개 이상의 출금계좌 지정 시 출금 우선순위는 오픈뱅킹 출금계좌가 우선합니다.
- ② 은행은 사전에 지정한 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한 경우 오픈뱅킹 출금계좌 지급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1 회 출금요청을 하며, 오픈뱅킹 출금계좌의 잔액 부족 시 은행 출금계좌에 출금요청을 합니다.
- ③ 제 2 항의 경우 은행은 사용자의 별도 거래지시 없이 오픈뱅킹 출금이체, 은행 계좌간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- ④ 출금계좌 중 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계좌에서 금액을 가져올 수 있으며, 한도대출 계좌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⑤ 은행의 자동이체 출금요청 금액이 출금계좌의 지급가능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출금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⑥ 출금이체 실패 시 은행은 사용자에게 모바일앱 알림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.

제 5 조 (서비스의 해지)

- ①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해지를 원하는 경우 모바일앱에서 해지 신청을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, 이 경우 은행은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.
 1.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 2.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
 3. 타인의 은행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

제 6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
- ①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은행이 정한 기준시각에 출금계좌에서 입금계좌로의 이체가 실행됩니다.
- ② 사용자가 신청한 출금이체일이 토요일/일요일/공휴일(근로자의 날 포함)인 경우,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.
- ③ 제 1 항,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경우(재가입 포함)에는 신청 후 4 영업일부터 적용 됩니다.
- ④ 오픈뱅킹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입금계좌로의 이체가 불가합니다.
- ⑤ 서비스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은행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은행 영업점,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 1 개월 전부터 1 개월간 게시합니다. 다만,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게시합니다.

제 7 조 (서비스의 이용중단)

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서비스 중단 시 그 사유와 내용을 은행 영업점,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 단, 아래의 긴급한 사유 발생시에는 사후에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.

1.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외부요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2. 천재지변,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3.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, 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

제 8 조 (출금한도)

- ① 사용자의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예금의 지급가능금액(한도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에 한하여 은행의 청구대로 출금합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오픈뱅킹업무를 이용한 서비스의 출금한도는 운영기관의 사용자별 이용한도에 따릅니다.

제 9 조 (거래불능 및 면책)

- ① 입·출금계좌의 부재(계좌해지) 및 출금계좌의 압류·지급정지 등으로 인한 지급 제한, 오픈뱅킹 이용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금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.
-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금이체 처리되지 않은 경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을 준용합니다.

제 10 조 (관할법원)

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며, 양 당사자간에 법률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 11 조 (약관의 효력)

- ① 이 약관은 사용자가 은행에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② 이 서비스에는 이 약관 외에도 은행의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「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」, 「계좌간 자동이체 약관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③ 이 약관과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」,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,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을 적용합니다.
- ④ 오픈뱅킹 출금계좌의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해당 참가기관의 약관을 따릅니다.

제 12 조(약관의 변경)

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제 29 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
제 13 조 (준거법)

이 약관의 해석·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.

부 칙 (2024. 06. 18)

제 1 조 시행일

이 약관은 2024 년 06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.